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197,017,855 | 5,910,536 |
| 일반회계 | 179,722,763 | 5,391,683 |
| 특별회계 | 17,295,092 | 518,853 |
| 기타특별회계 | 17,295,092 | 518,853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3,316,352 | 99,491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9,497,282 | 284,918 |
| 의료보호특별회계 | 365,936 | 10,978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76,792 | 2,304 |
|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| 2,351,343 | 70,540 |
|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| 1,687,387 | 50,622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 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"해당없음" 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057,773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